

# 체제 변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남북한 지적재산권제도 통일화 방안(提言)



신지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변리사

## I. 서언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단지 개성공단의 조성과 같은 남북의 정부차원의 의식적인 교류의 확대로부터 기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북·중, 남·중과 같이 중국을 사이에 둔 민간경제 교류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남, 북, 중국의 삼 경제권이 하나로 통합, 확장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경제교류를 통하여 남한의 경제권이 북한 및 중국으로 확대되어 가는 와중에서 남북간 지적재산권의 교류 및 제도의 통일화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남한의 경제는 점차 지식기반사회로 중심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추진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논의는 점점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의 경제가 고도로 집적된 지적산물에 의존할수록 그러한 지적산물의 효과적인 창출과 보호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1)</sup>

본 고는 앞으로의 남북경협시대, 혹은 장래에 도래할 통일시대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제도 혹은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적재산권이란 무형의 지식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경제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 간 효율적인 경협을 추구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본 고는 남북통일의 거의 유일한 모델로 참고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적어도 북한의 특허제도<sup>2)</sup> 변화는 단순한 체제 통합이 아닌 북한 내 체제 변동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므로 급작스러운 체

제 통합의 과정을 거친 독일 뿐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거친 중국의 사례로부터도 시사점을 얻어 이를 남북한 지식재산권 통일화 방안의 반영해야 함을 피력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 제약상 본고는 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관계에 적용되는데 왜 한계가 있는지를 논의하는데 집중하고 중국에 대한 분석은 추후 별도의 논의를 통하고자 한다.

## II.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현황 -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 1. 북한 지재권 논의의 특수성

북한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도는 남한 체제와의 통일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체제간의 통합 경험(예컨대 미국 연방 특허법의 탄생, 유럽의 특허법 통일 노력, 그리고 독일 통일시 동서독 간 특허제도의 통일 등)이 참고되어야 하는 한편, 현 북한의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소련 등 기타 사회주의 국가 등에서 일어난 체제 전환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참고해야 한다. 북한이 체제 전환과 체제 통합을 동시에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일 국가의 경험을 그대로 북한에 이식하기는 어렵다.<sup>3)</sup>

이(異)체제의 '통합' 과 체제의 '전환' 은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명백히 구분되는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이 참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로서 독일이 존재하는 결과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체제 통합과 체제 전환이라는 서

로 다른 목표를 구분 짓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체제 통합에 만 큰 비중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듯하다.

즉 기존의 북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연구들의 대체의 경향을 보면, 남북의 경제교류가 점점 활발해지는 현시점에서 남한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가, 산업재산권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여 남북 경제교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모하지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남북의 협력 혹은 제도적 통합을 강조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sup>4)</sup>

그러나 중국이 그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을 개혁한 사례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 제도는 일 국가의 소유권 제도의 큰 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통치철학 - 특히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과 맞닿아 있고 또한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도 차원이 아닌 거시적인 체제의 차원에서 분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특허법에 해당하는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어지는 발명권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허락되는 발명에 따른 권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발명권은 발명자에게 소정의 금전적 보상만을 허락할 뿐 어떠한 경제적인 처분권도 허락하지 않는바, 이는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주의 정신을 반영된 결과이다. 수십년간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고수한 북한으로서는 이제와서 발명권 제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적인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줄기가 매우 곤란할 것이다. 반면에 남한으로서는 특허권이라는 보장없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진출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며, 설혹 북한이 특허

- 1) 다수의 남한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위조상표사용, 불법복제, 기술유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거나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중국으로의 사업진출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없이는 지식기반 사업에 막심한 손해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2) 북한에서는 발명에 따르는 법적 권리로 발명권과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및 「발명법」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하에서 북한의 특허제도란 상기의 권리와 법령체계를 칭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3) 독일의 경우 통일을 통하여 체제통합과 체제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이지만, 동독의 경우 통일당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경제력을 자랑했을 뿐 아니라 통일 전 구 서독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개방형 관계를 지향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하여 독일식의 흡수식 통일을 통한 체제전환을 기대하는 데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4) 윤권순 등은 체제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여 선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체제 전환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있다.

적으로 외국인 내지 남한인에게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인정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질적인 보호가 북한 내부에서 보장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가 된다.

이렇듯 체제 전환은 남북한 모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으로서는 특허제도에 시장요소가 도입될 경우 전체적인 체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제도를 자본주의 형에 더욱 가깝게 전환하여 체제의 생산성을 개혁할 실익이 있는지를 타진해 볼 것이다. 남한으로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체제 전환으로부터 남한 측으로 돌아갈 경제적 이득(혹은 경제적 이득이 적더라도 다른 측면의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의 지적재산권을 통일화 내지 통합하는 것은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sup>5)</sup> 체제전환을 수반해야 하는 남북한 지적재산권의 통일화 문제는 당연히 어떠한 방식의 체제 전환이 가장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적절한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통일독일의 산업재산권 제도 통일사례는 어디까지나 선례에 불과하고 남북한의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통일 독일의 산업재산권 통일 형식은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식의 점진적인 형태보다는 통일 시점을 기점으로 급작스럽게 서독의 자본주의식 특허법으로 수렴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통합의 모델로서 통일독일의 형식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혁의 형식이 남·북한에게 적합한 지는 특히 지적재산권의 면에서 아직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

상호간 출원인정이나 권리의 상호인정 등 당장의 지적재산권 법령의 통일을 요하지 않는 사항도 결국은 일방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요소가 타방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제 전환의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상호간

출원인정이나 권리의 상호인정 등이 체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비용대비 효과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남·북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화 방안을 고찰함에 있어서 단지 남북 간 체제 통일 내지 통합의 문제가 아닌 북한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북한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고찰해야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고찰할 때도 다음에서와 같이 사회주의라는 북한의 체제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2. 북한의 특허제도-사회주의 체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의 특허제도는 구 소련의 것을 양수한 것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특허제도를 특징짓는 몇 가지 공통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sup>6)</sup>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의 특허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체제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구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된 특허법은 서방 경제체제에서 관찰되는 고전적인 특허제도와 구별되는 공통적 차이점이 있다.<sup>7)</sup> 특허권의 본질은 독점권으로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제3자의 특허실시가 금지된다는 것이고,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금지하고 사적 개인의 독점에 근거한 이윤추구를 배척하는 사회주의 이념 하에서는 특허권의 독점적 실시라는 권한이 사적 개인에게 허락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특허제도에서는 '발명권' 혹은 '발명자증'이라는 특수한 발명자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발명자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소정의 보상에 제한되고 특허권에 당연히 따라오는 실시의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발명권의 일 권능으로서 주어지는 보상권은 발명자의 노동 및 업적을 치하하여 국가가 '정신적 보상을 수여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사적 개인에게 사적 재산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sup>8)</sup>

5) 각국별로 지적재산권 체제가 상이하여 출원절차 및 보호의 면에서 효율적인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European Patent Convention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체제의 통일화 노력이 있어 왔다.

6) 구 소련의 특허제도는 기타 구 동독을 위시한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허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7) 이하 A. Vida, The Law of Industrial Property in the Peoples' Democracies and the Soviet Union(1963) 참조.

한편, 발명권의 대상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발명의 활용은 있지만 민간경제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사적 개인 혹은 사기업에 의한 상업적 배포 등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계획경제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국가는 계획된 생산범위를 벗어나는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다.<sup>9)</sup>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개인이 무언가를 발명할 경우 그 개인이 속한 국가기관이 발명의 이용권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발명은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자산(social property)으로의 본질을 갖게 된다.<sup>10)</sup> 물론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의 특허법에서도 공무원에 의한 직무발명 등 사적 개인에 의한 발명에 대해서 국가가 특허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유경제국가의 경우에 국가는 단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 중의 하나로 사고되는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계획경제 하의 독보적인 경제 주체인 국가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결과 특허권은 사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널리 개방 사용하는 대상인 것처럼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특허제도의 틀도 위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 일반에서 발견되었던 특허법의 특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의 특허제도에 대해서는 다수의 문헌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개요만을 적도록 하겠다.<sup>11)</sup>

우선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발명권과 특허권으로 이원화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발명권과 특허권은 다 같은 발명에 대한 법적보호형태로서 발명의 창조자라는 인정, 권리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심의절차, 기준이 대체로 같다고 한다.

그러나 발명권의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이용권은 국가에 속하므로 국가는 등록된 발명을 발명자의 승인, 합의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이전할 수도 있다.

반면 특허권에 대해서는 발명에 대한 이용권을 특허권소유자가 독점하며 그의 의사에 따라 이전 혹은 실시권설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별적인 인민 혹은 공민의 기업경영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므로,<sup>12)</sup> 개인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을 실익이 없고, 결국 발명에 대한 보상이 인정되는 발명권으로 권리 소유의 형태가 수렴되는 경향이다.

발명권을 중시하는 이상 북한의 특허법이 남한의 특허법과 같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위하여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발명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발명자에게 보상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국가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관 등에게 과제를 부여하여 발명창출을 꾀해야 한다거나 개인이 발명을 완성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관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등 국가발전을 위하여 개인이 발명활동에 복무하고 이를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가 강조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색채를 반영하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특허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대외교역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특허법 고유의 자본주의적 색채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바람직한 북한 특허제도 변화의 방향

#### 1. 원칙

남한의 특허제도는 단지 남한의 고유한 제도가 아니라 TRIPS 등 다자간 규범에 의하여 형성된 국제적 표준을 반영

8) 중국은 이와 같은 발명권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특허법에 잔존시키기 위하여 1984년의 대대적인 특허법 개혁시에도 발명권에 따르는 보상권을 폐기하지 않았다. 보상권이 실질적으로 발명창출의 인센티브로 기능하는 면이 있더라도 이는 정신적인 것이지(spiritual incentives), 물질 혹은 자산적 면모(material aspects)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 David Ben Kay, Comment,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Perspective, 33 UCLA L. Rev. 331, 333 (1985).

9) Vida, 901면

10) Vida, 901면

11) 이하의 개요 및 사용 단어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안내, 특허청, 2001에 실린 KDI 북한경제 리뷰, 2000년 10월, 을 참고한 것으로, 그 내용은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역사·법학」(2000년 제2호)에 실린 논문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관한 일반적 이해」에 근거한 것임

12) 이는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큰 틀의 수준에서 남한의 특허제도를 북한의 제도에 바꾸어야 한다는 등은 의미가 없는 논의이다. 즉 북한의 특허제도를 남한의 제도에 맞추는 전환시키는 것을 기본 틀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다만 바람직한 북한 특허제도의 변화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사항은, 앞의 논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한의 현행 특허제도가 철저한 사회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경직되고 고착된 인식과 태도를 감안하여 변화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체제 전반을 보아도 북한은 개방의 물결을 타고 있는 중국, 베트남, 구 동유럽 국가 등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사회체제를 고집하고 있고,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및 제도 일반에 익숙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행동양식이 남·북한 지적재산권 교류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구(舊)체제에 익숙한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행동양식이 신(新)체제로의 이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독일의 사례를 보아도 분명하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에 현재의 남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서 간에 교류가 왕성하고 별 마찰없이 제도의 통일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통일이 완성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통일비용이 일방적으로 구 서독에서 구 동독으로 투입되고 있다.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제도의 통일과 조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인식이나 행동 양식으로 인하여 체제 이전의 효율이 저하될 수도 있음이 강력하게 시사되는 지점이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경제적으로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빈곤을 극복하고자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제한적이거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윤 및 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체제 개혁에 실패하였고 결국 이

것이 빈곤의 늪을 지속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sup>14)</sup> 예를 들어 북한에서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결합을 전제로 독립재산제를 실시하는 협동농장이 등장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를 꾀한 바가 있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원칙을 버리지 못해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인 독립재산제의 도입이나 작업반 단위의 생산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견해 등에 비판적인 인식을 표명하고 있다.<sup>16)</sup>

이렇듯 사회주의 원칙에 고착, 경직된 북한의 인식과 행동양식에 비추어 볼 때, 수십년간 배인 사회주의 인식의 틀이나 행동양식이 단기간에 자본주의 체제에 걸맞게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북 상호 간에 특허의 출원이나 보호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체제의 통일이 애초의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무엇보다도 사유재산권의 존중이라는 개념이 전 사회적으로 희박하여 특허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남한의 특허정보가 북에 유출될 경우 남북교류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남한 기술을 허락 없이 불법 복제하는 북한기업이나 북한으로부터 저가에 상품을 공급받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후에까지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엄청난 통일비용을 남한 측으로 물리는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듯 경제주체들의 관성이 체제변화의 효과를 결정짓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식의 급작스러운 체제변화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인다. 이하에서는 구 동독이 사회주의 특허제도에서 서방 경제식의 특허제도로 변화해 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북한 특허제도 변화의 방향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3) 이는 같은 북한의 경직된 태도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1984년의 대폭적인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발명권 중심의 특허법으로부터 서방 경제식의 독점실시권이 보장되는 특허법으로 탈바꿈하였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14) 이영훈,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체제 변화 전망, 통일경제, 2002.1.2.

15) 자원 배분 우선 순위를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기존의 중공업 편중으로부터 탈피,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으로 말한다.

16) 이영훈, 앞의 논고, 80면.

2. 독일 사례의 검토<sup>17)</sup>

독일의 통일은 전체적으로 구 동독의 붕괴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통일시점인 1990년 10월 3일을 기점으로 구 동독 및 구 서독의 산업재산권(이하 “구권리”)은 통일시점 이전에 효력을 인정받던 지역, 즉 구 동독 혹은 구 서독의 지역에서만 보호되는 것으로 통일조약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이후 통일된 독일연방 전체에 걸쳐 구권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았는데 1992년 5월 1일에 발효된 “산업재산권의 확장에 관한 법”에 따라 구권리는 통일 후 1년 7개월만에 전 독일지역으로 확장되게 되었다.

아울러 통일 후의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은 구 서독의 법령을 중심으로 통일되었는데, 이러한 산업재산권법 통일은 비록 통일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통일시점인 1990년과 거의 동시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1990년 6월 26일자로, 즉 통일되던 같은 해에, 구 동독 의회는 1983년의 구 특허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구 동독 특허법을 구 서독의 특허법 규정과 일치시켰다. 개정된 주요규정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들과 특허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것 등이고, 아울러 북한의 발명권에 해당하는 경제특허<sup>18)</sup>를 폐지하고 오직 독점권이 있는 특허권만을 인정하였다.

본 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들 수 있는 의문은, 경제특허가 폐지되고 개인에게 독점적인 실시권을 인정하는 서방식 특허제도가 구 동독지역에 실행된 이후에 경제 주체의 발명창출활동이나 기술혁신활동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구 체제에 익숙한 주체들에 대하여 애초에 제도가 의도하는 바를 달성했는지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동독지역의 비효율적 경제활동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효율성이 특허법이

라는 법적 환경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Kogut과 Zander의 연구 중에 구 동독령에서 있었던 Zeiss라는 회사에 대한 실험적 실증을 토대로 한 흥미로운 발견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뛰어난 기술역량을 보였던 회사라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혁신능력의 발휘가 떨어지고 역량관리상의 비효율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에는 Zeiss라는 당시 광학기술 쪽으로는 매우 선도적이었던 기업이 있었는데, 2차대전을 계기로 동서가 단절됨에 따라 원래의 회사 본거지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Zeiss Jena, 서쪽에는 미국이 서쪽으로 탈출시킨 과학자와 기술자를 중심으로 재건한 Zeiss Oberkochen이 존재하게 되었다. 모기업이 동일한 이 두 기업의 특성상 두 기업은 축적된 노하우 및 기술이 시작점에서 동일했을 뿐 아니라 기술관리능력까지 흡사했다고 한다. 두 기업은 체제상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 시절 R&D 성과 및 특허활동에 있어서 서로 매우 유사하였으며, 보유기술이 우수하고 따라서 각 회사가 활동하는 시장 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sup>19)</sup>

이와 같이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던 동독의 Zeiss Jena도 통일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오히려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다.<sup>20)</sup> 얼핏 생각하기로는 계획경제 때와 달리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 및 사업의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이를 뒷받침 할 기술적 역량을 Zeiss Jena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Zeiss Jena가 통일 이후 오히려 저 생산성을 겪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특허법은 자유로운 독점권의 처분 및 수익창출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Zeiss Jena의 생산성에 보탬을 주는 요소였을 듯 하다.

17) 이하의 독일 통일에 대한 은 이길상, 독일의 산업재산권분야 통일에 관한 연구, 특허심판원(2000)을 발췌, 요약한 것임

18) 즉 독점성이 없는 일종의 발명자증이다.

19) 동독의 Zeiss Jena는 동독의 일반적인 기업의 대표형은 아니다. 즉 다수의 동독 기업은 비혁신적이고 생산성이 좋지 못했으며, 동독 전체를 통틀어 혁신적인 성과물이 발표된 사례가 별로 없다. Kogut과 Zander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사회주의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는 스펀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Kogut, Zander, 전제논문, 182면 참고.

20) 통일 이후 회사 일부가 서독 회사로 편입된 후 Jenoptick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 본 고에서는 혼동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Zeiss Jena로 일관되게 사용한다.

이에 대하여 Kogut과 Zander는 Zeiss Jena가 신(新)체제 하에서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거나 기본적으로 경쟁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알지 못한 채 구 서독 혹은 서방 기업과의 경쟁환경에 노출되었고, 결국 그들에 우위할 시장을 가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Zeiss Jena는 다행히 국가 보조금을 받은 후에 초기의 저 생산성을 극복했는데, 아마 러시아 등 사회주의 전환국가에서 주창된 바 있는 충격요법(Shock Therapy)이 철저히 관철되어 보조금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Zeiss Jena의 기술력은 고사되었을 것이다.

독일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경제 주체에게 신체제에게 적응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신체제 하에서 생산적으로 전환될 수 있었을 자산까지 고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특허제도의 맥락에서 풀어보면, “특허제도가 비록 수익 창출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경쟁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의 주체들이 이러한 특허제도의 효과를 실현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관계에서 결국 특허제도를 통일하여 남한식의 특허제도가 제 빛을 발하려면 먼저 북한의 경제주체들의 사고 및 행동방식이 경쟁체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IV. 결론

본고는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북한 특허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고의 짧은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어떠한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결론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체제 전환의 효과에 있어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이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북한의 특허제도의 변화방향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북한이 장기간 극히 폐쇄적이었고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북한령 내에서 남한식 특허제도를 단순히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다. 경쟁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 경제주체들이 특허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을 끌어낸다기보다는 오히려 특허제도가 중국의 사례에서 관찰되듯이 모조 및 모방에 기초한 사업의 가능성만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중국 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국의 제약특허나 영업비밀을 가져와서 자국에 특허등록한 후 사업을 하는 일이 비재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 경제주체들이 특허권을 이용한 시장경제의 수익창출 모델에 익숙해지고 특허권과 같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개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독일과 같은 급작스러운 특허법 개혁의 모델을 추구하기보다는, 중국과 같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의 요소를 체제에 반영하는 것과 아울러 구 특허법의 요소를 적절히 신 특허법에 잔존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점진적 변화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자본주의 요소가 반영된 특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일단은 개성공단 등 자유경제구역에 한정적으로 실시하거나, 혹은 특허보호를 2원화하여 주민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은 적극적으로 북한에 개방을 하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고도화된 기술은 보호해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밀어내기’ 이론의 견지에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한나라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특히 북한과 같이 기본적인 생산력이 최빈국의 수준을 달리고 있는 나라에서는, 혁신 혹은 특허보호보다는 적당한 모방이 널리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고를 마무리하며, 북한의 특허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연구의 기본방향은 효율적인 체제 변동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발명특허 2008, 2